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19년 12월 17일 교 육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0월 15일, 황인구 의원

2.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3. 상정일자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2019년 12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황인구 의원)

1. 제안이유

○ 일부 고등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미준수, 불합 리한 처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 현장과의 연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지원 및 관 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현장실습의 내실화와 참여 확대, 산업체와의 협력 제고 등을 위한 교육 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조례의 적용범위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현장실습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6조).
- 라.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실습 운영기준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 현장실습 추진의 내실화와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한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바.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사. 현장실습의 방법,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사전교육, 현장 실습협약과 현장실습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 조~제16조).
- 아. 원활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단위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자. 현장실습 산업체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학부모와 졸업생 등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제19조).
- 차. 현장실습 내실화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학생, 학교 등에게 포상을 할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10월 15일 황인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052호로 발의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 니다.

○ 동 조례안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대 한 소양과 능력 계발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적용함으로써,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 및 일을 경험하는 일련의 교육활동입니다.
- 그러나 직업계고 현장실습과정에서 다수의 기업체는 학생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여 권익 및 노동인권침해(임금 미지급, 근로시간 초과, 유해위험업무 지시, 부당한 대우), 안전사고 발생1)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고.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의 희망·전공과 무관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운영 하는 등 학생의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보다는 근로에 중심을 두고 운 영하는 제도적 문제점도 발생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²⁾ 마련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대책 및 법령 개정 경과>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17.8월)	·조기취업 → 학습 중심 현장실습체제 개편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17.12월)	•조기취업 형태 현장실습 전면폐지

^{1) 2014}년 울산, 2017년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발생 등

²⁾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정착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2.)

	• 현장 전수전검,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18.2월)	•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학생중심 운영 • 안전 확보 범위 안에서 탄력적 운영·지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18.3월)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8.9월)	•현장실습생 인권 보호, 안전 보장 •재학생의 현장실습 선택권 보장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19.1월)	• 운영절차 간소화를 통한 우수기업 참여 확대 • 현장실습생 안전권익보호 강화 현장실습 인프라 확충 등			

- 이에 서울시교육청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교육부, 2019)"에 따라 「2019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수립·시행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실습 지원단, 선도기업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 또한 '18년 기준 서울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체 수는 1,936개로 건설·공무원·금융·무역·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4,204명의 학생 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으며³), 현장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의 산업인력으로 발돋움 하는 기반을 다져나아가고 있습니다.
- 이런 면에서 동 조례안은 학생안전·노동인권 보호와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 제고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현장실습 운영계획의수립, 지도·점검, 학생의 안전보장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O 동 조례안은 총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³⁾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현황

구분 기도기의 기사기의		2018년				
1 5	선도기업	참여기업	계	선도기업	참여기업	계
학생 수	2,650		2,6650	2,398	1,842	4,240
기업 수	939	ı	939	868	1,068	1,936

제5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책무, 적용범위,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등 총칙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7 조까지는 현장실습의 기본방향,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 조에서는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현장실습의 방법, 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사전교육, 협약, 지도·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표창 등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의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체계를 교육청에 맞게 재구성 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입안실무」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현장실습의 운영기준에 대한 의견(안 제7조)
 - 안 제7조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기준 수립 및 현장실습에 필요한 매뉴얼의 개발·보급, 선도기업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실습 운영기준이 포함된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현장실습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현장실습 운영기준, 매뉴얼 수립·검토, 선도기업의 심의·선정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교원 등으로

구성된 "선도기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협의체 구성에 있어 직업계고등학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협의체가 학교현장에 필요한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매뉴얼의 수립·검토, 선도기업의 심의·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협의체 구성·운영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3)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등에 대한 의견(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업체의 발굴과 현장실습 운영기 준에 적합한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시 사전 현장방문 및 위원회의 심 의, 선도기업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8조 제2항에서는 현장실 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분야, 현장실습프 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1조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울시교육청 현장실습 운영지침의 세부적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그동안 학생의 희망·전공과 무관한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기업체의 학생노동인권침해, 안전사고 발생 등이 현장실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실습산업체 발굴 및 선정 있어 학생의 전공과의 연계 및 희망 수요를 반영하고, 학생안전·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사 전에 산업체를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 가능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학생의 안전 보장에 대한 의견(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현장실습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체 계 마련과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험·공 제급여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는⁴)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와 동등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한 특례조항으로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 제4 항5)에서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공제회는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제외한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⁴⁾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 6. 4.>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⁵⁾ 제19조의2(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 공제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렁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2조 제4호 중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공제회는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제외한 공제급여를 지급한다.

- 이와 같이 안 제15조는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치료 와 지원, 그리고 보상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 됩니다.
- O 참고로 교육청도 동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407, 2019.11.18.).
-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 토론요지 : 없음.
-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 Ⅲ.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 ₩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현장실 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현장실습"이란「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 2.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 3. "현장실습산업체"란 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를 말한다.
-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공과 교육 과정을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 및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을 위한 현장실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 형 고등학교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 3.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산업· 문화예술정보학교
-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현장실습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방향) ①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하여 현장적응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현장실습과 취업을 구분하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시 산업체 선정과 실시시기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직업적성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바탕으로 교내활동, 현장체험학습,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약정형현장실습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과 함께 현장실습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 및 매뉴얼을 수립·개발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하여 이미 현장실습을 받은 현장실습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운영기준 및 매뉴얼의 수립·검토, 선도기업의 심의·선정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관련 관계 기관, 전문가,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 하 "선도기업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장은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 실습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의 운영계획은 학교 구성원, 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를 하여 수립하되,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계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지역 산업계 및 취업 관계 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은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장, 학과부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제10조(현장실습의 방법) 현장실습은 학교와 산업체의 여건, 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의 발굴이 어렵거나 산업체 현장실습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교내 활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운영할 수 있다.
 - 1.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 2.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 3.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4. 그 밖의 현장실습

- 제11조(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 및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적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실습이가능한 산업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산업체를 사전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경우 원활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한다.
 - 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가 운영기준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육감에게 선도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선도기업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도기업으로 지정 할 수 있다.
- 제12조(사전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실습 활동 중에 합리적인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산업안전·직업윤리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정보, 직무 내용, 현장실습제도 및 운영계획 등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기관·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현장실습협약의 체결) ① 단순 견학이나 체험이 아닌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및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함께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에 관계 법령의 준수, 현장실습 담당자의 배치 등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14조(현장실습 지도·점검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문 순회지도를 실 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지도·점검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현장실습 담당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학생의 안전보장)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123조에 따른 보험급여 외에「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6조(현장실습의 평가)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 정책 수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다.
- 제1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원활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단위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산업 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새로 발굴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19조(학부모 등의 참여)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현장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0조(표창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내실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 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적인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